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주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6659

발의연월일: 2022. 7. 26.

발 의 자: 김주영·정일영·김승원

김영진ㆍ허 영ㆍ신영대

위성곤 • 서삼석 • 강득구

이동주 · 김영주 · 윤후덕

김경만 · 용혜인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납세자에게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여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 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역외거래는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포착이 어렵고 적발에서 과세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인 5년보다 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역외거래에 대한 장부와 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은 일반적인 거래와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실효성을 제고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역외거래의 경우 납세자가 장부 및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

년간 보존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임(안 제85조의3제2항).

법률 제 호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의3제2항 본문 중 "5년간"을 "5년간(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5조의3(장부 등의 비치와 보	제85조의3(장부 등의 비치와 보
존) ① (생 략)	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	②
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	
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	
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	<u>5</u>
<u>년간</u>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	년간(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)
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	
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	
까지 보존하여야 한다.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